

#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0. 13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8

다. 상 정 일 자 : 제8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위원회(10. 30) 상정,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윤여철 세무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부동산중개업법, 석유사업법 개정 등 상위 법령의 제·개정과 '98년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용료, 수수료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부동산중개업법, 석유사업법 제·개정에 따른 수수료 9종 신설
-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수료 7종 폐지
- 지방자치단체의 2000년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다른 수수료 5종 현실화

## 3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8조
-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
- 내수면어업법 제23조
-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
- 석유사업법 제31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번 개정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석유사업법의 제·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관계와 석유판매업 관련 수수료가 신설되었으며,
- 정부의 2000년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응익원칙에 입각하여 원가보상의 80% 수준까지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세수가 일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.

5. 질의답변 요지

질의위원	질의내용	답변요지
이용조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정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 단가의 인상율이 대부분 100%에서 공유재산 대부신청의 경우 1000%까지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은 현실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해관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정부의 수수료 단가 현실화 지침과 부산시의 각 구·군 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으며,</li> <li>· 업무수행에 따른 원가분석을 통해서 단가를 산출한 요액으로 그 동안 현실화 반영비율이 낮은 항목은 다소 인상폭이 높으나 대부분 영업이익과 관련된 항목으로 일반서민의 생활증명 수수료와는 다소 구분되어야 할 사항으로 봄</li> </ul>

6. 토론요지

- 반대발언(이용조 위원)
  - 정부의 각종 수수료 현실화지침에 따라 타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인상률이라고 하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자체 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 요인이 생길 때 반영하거나 점차적으로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, 이렇게 일시에 100%이상 큰 폭으로 과다하게 인상하는데는 반대함

○ 찬성발언(이상은 위원)

- 현재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비율이 업무처리에 따른 원가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이번에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지침에 따라 인상되어 반영된 비율도 80%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- 2001년도 우리 구의 세수전망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점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한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출한 원안대로 인상요인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찬성함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